

공동 2014-08-02

2015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

2015. 2.



공동 2014-08-02

2015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

책임연구원: 하 연 섭 (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

공동연구원: 이 주 헌 (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

연구보조원: 임 유 미 (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)



제 출 문

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

본 보고서를 「2015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」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15. 2.

- 주관연구기관명 :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
- 연 구 기 간 : 2014. 8. ~ 2015. 2.
- 주관연구책임자 : 하 연 섭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 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요 약

1. '15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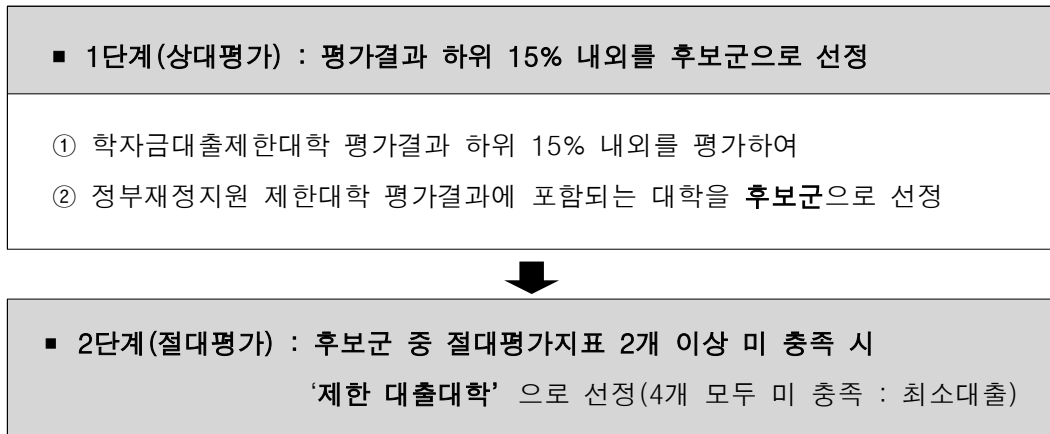
○ 방향

- 설립목적·교육여건이 다르므로 대학과 전문대를 분리·평가
- 본·분교를 분리하여 모든 지표 값 산출이 가능한 경우, 신청 대학에 한해 본·분교를 분리하여 평가

○ 평가방법

- **제한대출그룹** : 상대평가(1단계) + 절대평가(2단계)

<표 3> 대출제한그룹 평가방법



- **최소대출그룹** : ① 절대평가지표 4개 모두를 미충족하는 대학
②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**부실대학 등***

- *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실적인 미흡한 대학, 행·재정제재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,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 등은 최소대출
- ※ '14년도 신규로 지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자동 포함(사립대학제도과-5700, '13. 9. 25)

2. '15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지표

- (상대지표)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최대한 동일한 지표·배점을 유지하되, 학자금 대출제한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
 - 재학생 충원율 배점 축소 : 다른 지표와의 균형을 위해 **재학생 충원율 비중 일부 낮춤**(대학·전문대 25→22.5%)
 - 등록금 완화지수 배점 확대 : **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** 촉진을 위해 **등록금 완화지수 비중 높임**(대학·전문대 각 2.5%p↑)

<표 4> 상대평가 지표

구 분	4년제 대학		전문대학	
	'14학년도	'15학년도	'14학년도	'15학년도
취업률	15%	15%	20%	20%
재학생 충원율	25%	22.5%	25%	22.5%
전임교원 확보율	10%	10%	7.5%	7.5%
교육비 환원율	10%	10%	7.5%	7.5%
학사관리	10%	10%	10%	10%
장학금 지급률	10%	10%	7.5%	7.5%
연체율(상환율)	5%	5%	5%	5%
등록금 부담완화	10%	12.5%	7.5%	10.0%
법인지표	5%	5%	5%	5%
산학협력수익률	-	-	5%	5%

○ (절대평가 지표 및 기준치)

- 최소한으로 기준 유지
- 교육비 환원을 : 지표의 변별력과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되, 기준은 전년도 하위 15% 대학 평균수준(극단값 제거) 설정

<표 5> 절대평가 지표 및 기준치

구 분	기 준		변경 내용
	4년제	전문대학	
취업률	50%	50%	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*(기존 절대지표값 동일)
재학생 총원율	90%	80%	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
전임교원 확보율	61%	51%	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
교육비 환원율	100%	95%	■ 기존 지표 기준 유지

3. '16년 이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의 기본 방향

가.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

- '16학년도에 실시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제한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출제한대학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

나.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방향

- 정량 및 정성지표 활용

-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,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
-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, 학사관리, 교육과정, 학생지원, 교육성과,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

○ 대학의 특성·여건 고려

-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,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

다.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 도입 및 지속적 노력 평가

- 기존의 대학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
- 평가 시점에 임박해서 노력한 대학보다 꾸준히 노력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간을 3년 정도로 설정할 필요

4. 구조개혁평가와 학자금대출 제한제도의 연계 방향

- 구조개혁평가 결과 D 등급의 경우 가구소득 9~10분위 신입생의 경우, 등록금 대비 50% 수준으로 대출 제한
- 구조개혁평가 결과 E 등급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(일반대출 및 ICL 대출) 전면 제한

<표 6>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의 활용

등 급		구조개혁 조치
그룹 1(A~C)		※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
그룹 2	D	'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, '16학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급, '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 지정*
	E	'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, '16학년도 국가장학금 I·II 유형 미지급, '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**

* 가구소득 9~10분위 신입생의 경우, 등록금 대비 50% 이내로 대출 제한

**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(일반 대출·ICL 대출) 전면 제한